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n *JeongSa-Gongsin-Nokgwon*

진 나 영 (Na-Young Jin)*
송 일 기 (Il-Gie Song)**

목 차

1. 緒 論	3.3 體制 分析
2. 『定社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4. 錄券의 內容 分析
2.1 頒賜事由	4.1 공신의 직함·성명 및 공로사례
2.2 受給者	4.2 공신의 직함에 따른 품계 분석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4.3 포상 및 특전
3.1 現存本 現況	4.4 녹권 벌급자 분석
3.2 形態 分析	5. 結 論

초 록

『정사공신녹권(定社功臣錄券)』은 태종이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힘쓴 신하들을 정사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문서이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정사공신녹권』 복제본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보았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을 분석하여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녹권의 내용을 세세히 분석한 연구결과, 『정사공신녹권』은 필사본으로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두 29명(1등 12명, 2등 17명)이 기재되었으며,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기술되었다. 1등공신 직함의 품계가 2등에 비해 높았고 비교적 왕의 친인척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포상 및 특전규정이 등급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등급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 규정 내용이 상이(相異)하였다. 공신에 관한 제반사무를 알아본 공신도감의 관원들의 구성과 녹권 안 그들의 성씨(姓氏)와 수결을 통해 관원들의 상세한 성명을 파악하였다.

ABSTRACT

Jeongsa-gongshin-nokgwon (定社功臣錄券) is a document issu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 king appointed the vassals of merit who suppressed the First Rebel of Prince in 1398 as *Jeongsa-gongshin* (定社功臣) and gave them titles and rewards as described in the *Jeongsa-gongshin-nokgwon* document.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and process of the rewards given to the vassals by way of the existing copy of *Jeongsa-gongshin-nokgwon*. The form and organization of the document were analyzed in detail. The titles given to the vassals were classified into each grade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sought. The content of the document was also analyzed in detail.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Jeongsa-gongshin-nokgwon* is a manuscript and it consists of 3 parts: introduction (卷首), main text (本文), and ending (卷末). Names and titles given to 29 vassals of merit are listed of which 12 vassals were first grade and 17 vassals were second grade. The ranks of first-grade vassals of merit were higher than the ranks of second-grade vassals of merit. In the first-grade vassals of merit, there were relatively more relatives of the king. The rewards and privileges given to them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grade. The content of regulation was also different within the same grade, depending on the person. The formation and names of government officers, who worked in the temporary office in charge of rewards to the vassals of merit (Gongshin-dogam, 功臣都監), were verified by the approval signatures and last names found in *Jeongsa-gongshin-nokgwon*.

키워드: 『定社功臣錄券』, 정사공신, 제1차 왕자의 난, 방식의 난

Jeongsa-gongshin-nokgwon, *Jeongsa-gongshin*, the First Rebel of Prince in 1398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jny415@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5일 계재확정일자: 2013년 8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27-250,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227]

1. 緒 論

조선시대에는 태조대부터 영조대까지 모두 28 차례의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다. 공신제도에 따라 정공신(正功臣)을 우선 책봉한 후에 그들보다는 공이 작은 이들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책봉하였다. 이 중 초기인 태조부터 태종까지 봉해진 공신은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 공신(佐命功臣)으로, 이들 정공신에게는 공신교서(功臣敎書)와 공신녹권을 모두 반사하였으나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녹권만을 발급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와 그 이후의 공신 제도를 비교하니 삼공신 이후에 책봉된 정공신에게는 공신교서만,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녹권만을 반사했다. 그러므로 정공신에게 발급된 공신녹권은 희귀한 자료로서, 현재 『개국공신녹권』과 『좌명 공신녹권』이 전해져 이에 관한 연구가 있고, 지난 2006년 장철(張哲)에게 발급된 『정사공신녹권』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유일본으로 알려진 『정사공신녹권』은 문서 자체의 형태 및 내용 연구를 통해 당시의 공신 책봉의 사실 및 정치적 역학 관계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특히 정공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과 원종공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과의 서지적 형태에 관한 차이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의 대상 녹권인 『정사공신녹권』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공신으로 삼아 1398(태조 7)년에 반사된 것으로, 필사된 권자본의 형태이다. 정사공신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역사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먼저 정사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녹권 수급자의 가계와 녹권 편찬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서지적 검토를 하였다. 또한 녹권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 당시 녹훈자의 보상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공신에 관한 제반사무를 맡아 보았던 임시설치 기관인 공신도감의 구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정사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그 반사사유를 알아보고, 현존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보며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사공신의 논공행상을 포함한 그 당시 포상제도의 현상을 고찰해 보겠다.

2. 『定社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2.1 頒賜事由

정사공신(定社功臣)은 1398(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을 주도하여 성공시키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태조의 8남(男)인 방석(芳碩)과 그를 옹호한 정도전(鄭道傳), 남은(南閔), 심효생(沈孝生), 장지화(張至和), 이근(李勤) 등의 구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른바 방원파(芳遠派) 29명을 두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정사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과정은 『조

〈표 1〉 定社功臣의 冊封 過程

年代	朝代	月	日	内容
1398	태조 7 정종 즉위	08	26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남은·심효생 등이 숙청됨
		09	17	정사공신의 등급을 정하여 교지를 내림
		10	01	정사공신의 책록과 등급별 포상 내역을 정함
		10	09	정사공신 29인을 거느리고 맹약함
		10	26	정사공신들이 근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임금을 접대함
		11	18	정사공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려 줌
1399	정종 1	08	12	공신도감에서 임금의 화상과 정사공신의 화상을 바침

〈표 2〉 定社功臣의 명단

區分	人員數	姓名
1등	12	李和, 李芳毅, 李芳幹, 李芳遠, 李伯卿, 趙浚, 金士衡, 李茂, 趙璞, 河峴, 李居易, 趙英茂
2등	17	良祐, 沈淳, 福根, 李之蘭, 張思吉, 趙溫, 金輅, 朴苞, 鄭擢, 李天祐, 張思靖, 張湛, 張哲, 李叔蕃, 辛克禮, 閔無咎, 閔無疾
合計	29	*굵은 글씨는 후에 삭적된 인물임.

『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정리하면 〈표 1〉의 내용과 같다.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정사공신이 책봉되었다. 등급은 2개로 나누었고 모두 29명의 공신들이 책록되었다. 이들과 왕은 함께 모여서 맹약을 하며, 후에 이들에게 공신교서와 녹권을 내려주었다. 29명 정사공신의 명단은 〈표 2〉와 같다.

1등공신은 12명으로, 이방원의 친인척들이 많으며, 이방원을 군사적으로 돋거나 정도전 쪽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2등공신은 17명으로, 이방원을 지지하거나 군사행동을 지휘하고 직접 군사행동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후 1400(정종 2)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사공신간의 왕권 계승권을 둘러싼 무력대결이었다. 정사공신인 이방원과 이방간이 정종 이후의 왕권을 노리고 충돌한 것이다. 이 왕자간의 다툼에서 이방원이 승리하고, 패배

한 이방간과 그의 협력자들은 정사공신에서 삭제되었다. 민무구, 민무질, 이숙번 등은 이방원의 측근이었으나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들의 발호를 우려하여 삭제되었다. 정사공신으로 남은 사람들은 29명 중 18명이었다.

2.2 受給者

연구 대상본인 안동장씨중앙종친회 소장의 『정사공신녹권』은 앞부분에 녹권을 받는 대상인 수급자(受給者)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는 녹권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본 연구 대상본의 수급자는 '推忠靖難定社功臣嘉靖大夫中樞院副使都評議使司使 張哲'이다.

수급자 장철(1359-1399)은 자(字)는 자명(自明)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고려 1388(우왕 14)년, 만호로 있을 때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요동정벌에 종군하였다가 위화도회군에 동참하여 회군공신(回軍功臣)이 되었다. 조선 1393(태조 2)년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돈령승선(敦寧丞善) 도총제사(都摠制使)가 되었다. 1397년에는 해로(海路)로 보내어 갑사(甲士)·척석군(擲石軍)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왜구를 쫓아 잡았다.¹⁾ 1398(태조 7)년에 중추원부사가 되고,²⁾ 그 해 이방원을 도와 세자인 방석을 보필하던 정도전·남은 등을 살해하고, 방석의 난을 평정하는 데 협력한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에 책봉되었다.³⁾ 그 후에 화성군(花城君)에 봉해지고, 이어서 영흥부사(永興府使)를 지냈다. 1399(정종 1)년 왕위를 물려주고 태상왕(太上王)으로 있던 태조를 수행하여 한양 신도에 갔을 때 등창이 생겨 급사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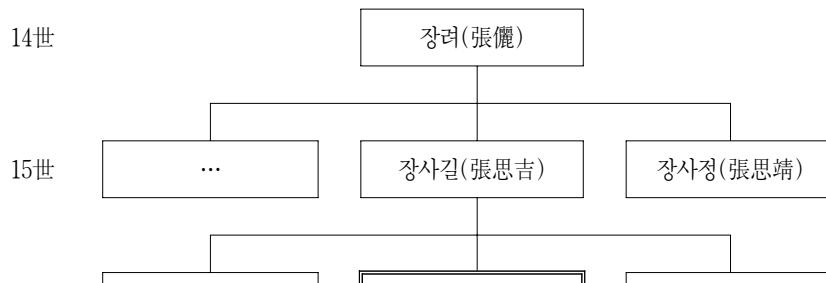
통행본인 『안동장씨대동보(安東張氏大同譜)』의 보학 자료를 토대로 그의 가계를 작성해 보면 <그림 1>의 가계도와 같다.

수급자 장철의 조부는 려(儻, 1295-?)로, 기

록에 따라 烈(烈) 또는 傑(傑)자로도 쓰인다. 자는 시유(始有)이며 1323(忠肅王 10)년에 문과에 합격했고, 예의판서(禮儀判書)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을 지냈고 후에 의주목사(義州牧使)를 지냈다. 화령백(花寧伯)에 봉해졌으며, 조선조에서는 벼슬을 않았다. 그의 부인은 경창택주(慶昌宅主) 곡산강씨(谷山康氏)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윤성(允成)의 딸로, 태조비(太祖妃)인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와 자매간이다.

장철의 부는 사길(思吉, 1341-1418)로, 자는 창만(昌萬)이며 호는 복재(復齋)이다. 1361(공민왕 10)년에 문과에 합격하였고, 후에 아버지 려를 따라 의주에 갔다. 이성계(李成桂)에게 무예를 인정받아 위화도에서 함께 회군한 뒤 회군공신(回軍功臣)에 서훈되고, 1390(공양왕 2)년에 밀직부사를 거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1392(태조 1)년에는 아우 사정(思靖)과 함



<그림 1> 수급자 장철의 가계도

1) 『朝鮮王朝實錄』, 太宗 6年 7月 11日 庚申條.
 2)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9月 1日 癸酉條.
 3) 『朝鮮王朝實錄』, 太宗 7年 9月 17日 己丑條.
 4) 『朝鮮王朝實錄』, 定宗 1年 11月 1日 丁卯條.

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의홍 친군위동지절제사(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를 겸해 이성계의 친병(親兵)을 통솔하였다. 이듬해에는 황해도의 문화·영녕(永寧)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으며, 1398년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장철과 함께 정사공신 2등이 되어 영가군(永嘉君)으로 개봉(改封)된 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관공조사(判工曹事)·의홍삼군부우군절제사(義興三軍府右軍節制使)를 지내고, 이어 화산군(花山君)으로 개봉되었다. 1400(정종 2)년에는 사헌부로부터 제2차 왕자의 난 때 사정과 함께 반역을 모의했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⁵⁾ 태종 때 우군총제(右軍摠制)·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등을 지낸 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진봉되어 공직을 물리났다.

장철의 속부인 장사정(?-?)은 아버지 려의 4남으로, 자는 화중(化中)이다. 1392년 개국공신이 되어 대장군으로 등용되었고, 1397년 중추원부사가 되었다가 곧 조전절제사로 전임되어, 풍해도(豐海道) 서북연해에서 양민을 약탈하는 왜구를 사로잡았다. 1398년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있을 때, 이방원을 도와 방석의 난에 협력한 공으로 형 사길과 조카 철과 함께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고 화성군(花城君)에 봉작되었으며, 1411(태종 11)년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7년 전주에 유배중인 방간(芳幹)의 첩을 거두어 동거하다가 함부로 벼린 죄로 탄핵되어 상주에 유

배되었다가,⁶⁾ 다음해 덕천에 자원안치(自願安置)되었다.⁷⁾

안동장씨의 가계도를 통해 장사길·사정 형제는 개국공신과 정사공신에 책봉되었으며, 본 녹권의 수급자인 장철은 아버지와 속부와 함께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공신 중에는 장철·장사길 부자 및 속부 장사정과 같이 가족관계로 묶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한 가문 안에서 여러 명의 공신이 책봉되면 그 가문의 세력이 커지기 마련으로, 공신 안에서 위와 같은 관계들을 연구하면 녹권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조선시대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이 장에서는 『정사공신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하는 『정사공신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3.1 現存本 現況

『정사공신녹권』 현존본의 전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안

5) 『朝鮮王朝實錄』, 定宗 2年 6月 2日 乙未條.

6) 『朝鮮王朝實錄』, 太宗 17年 12月 4日 乙酉條.

7) 『朝鮮王朝實錄』, 太宗 18年 6月 21日 更子條.

동장씨중앙대종회(安東張氏中央大宗會)에서 장철이 발급받은 녹권을 보관하고 있었다. 『정사공신녹권』은 현재까지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안동장씨중앙대종회에서 실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복제본을 대신 살펴볼 수 있었다. 정사공신에 관한 내용을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 외에 상기의 녹권자료를 통해 정사공신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등급별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그리고 공신도감에 대한 사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조선 초기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들 녹권의 복제 상태는 비교적 깨끗하고 양호한 편이며, 녹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3.2 形態 分析

연구 대상본인 장철에게 발급된 『정사공신녹권』의 형태적 서지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定社功臣錄券』의 書誌

定社功臣錄券 / 功臣都監 編. - 筆寫本. - 漱城 [서울]: 功臣都監, 太祖 7(1398)
卷軸裝1軸(5張): 上下單邊 31.5 cm, 朱絲欄,
96行字數不定 ; 42.5 × 372.4 cm

印記: 吏曹之印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 자료인 『정사공신녹권』은 조선 초기에 발급한 공신녹권으로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다.

변란(邊欄)은 상하단변이고 상하의 길이는 31.5cm이며, 변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전체 길이는 세로 43.5cm, 가로의 길이가 372.4cm인 권

자본(卷子本)으로 저지(楮紙) 5쪽을 이어 붙였다. 모두 96행이나 자수(字數)는 각각 다르게 배자되었다. 인장(印章)은 「吏曹之印」으로, 모두 9곳에 주인(朱印)되었다. 주인된 곳을 살펴보니 접지(接紙) 부분 4군데와 앞의 4개의 종이의 가운데 부분에 각 1개씩 그리고 공신도감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 부분 앞에 나오는 녹권시행일자 부분에 1개, 모두 9군데에 나타난다.



녹권에 주인된 「吏曹之印」



「吏曹之印」

〈그림 2〉 「吏曹之印」 비교

3.3 體制 分析

연구대상본 『정사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3.1 卷首

『정사공신녹권』 권수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처,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하였다. 가장 첫 행에는 공신 책봉 및 녹권 발급 관련 기관인 '功臣都監'이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의 공신호·직함과 성명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발급 목적을 적었는데 위의 수급자를 공신으로 책봉하겠다는 내용이다.

〈표 4〉 『定社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發給機關	9군데에 「吏曹之印」朱印
	受給者	功臣號、職銜 姓名	
	문서 발급의 목적	수급자를 공신으로 책봉함	
本文	出納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 책봉) 職銜 姓名	9군데에 「吏曹之印」朱印
	王旨의 내용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공신 책봉 사유	
	포상 및 특전 규정	등급별 포상 및 특전 규정	
	각 관서별 업무 분장 사항		
	教旨의 내용		
卷末	녹권시행일자		9군데에 「吏曹之印」朱印
	都監員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와 手決	

3.3.2 本文

본문은 공신 책봉에 관한 왕의 명령을 받아 이를 출납한 날짜와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그리고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왕지(王旨), 그에 이어서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및 이들의 공신 책봉 사유를 자세히 적었다. 등급별 포상 및 특전 규정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관서별 업무 분장 사항의 내용

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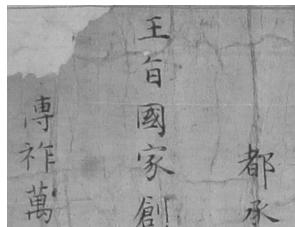
1398년 9월일, 왕이 정사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도승지(都承旨) 이문화(李文和)⁸⁾이다. 다음에는 '王旨'를 표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왕지'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부분이므로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표기이다. 위

8) 생몰년은 1358(공민왕 7)~1414(태종 14)년으로,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백중(伯仲), 호는 오천(烏川)이다. 평장사(平章事) 지저(之氏)의 6대손이며, 부친은 전공판서(典工判書) 심(深)이다. 1380(우왕 6)년 문과에 장원 급제해 우정언·우현남·예문응교를 거쳐 경상도안렴사를 지내고, 공양왕 때 우사의를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좌간의대부에 등용되고 1395년(태조 4) 검교시중직(檢校侍中職)의 혁과를 주장하였다. 1397년 좌승지를 거쳐 이듬 해 도승지 겸 상서윤을 지냈다. 1399(정종 1)년 생원시를 관장하고 이듬 해 첨서의홍삼군부사(簽書義興三軍府事)가 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해 사평부우사로 등용되었으나 분경(奔競: 大官이나 권세가를 찾아다니면서 업관이나 이권운동을 함)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취임하지 못하고 예문관대제학이 되었다. 1402(태종 2)년 경상도도관찰출척사로 외방에 나가고 이어 참찬의정부사·사평부우사를 거쳐 예문관대제학·대사헌을 지냈다. 1405년 예조판서를 거쳐 이듬 해 전라도도제찰사 임무를 대행하고 이어 명나라 황엄(黃儼)의 접반사가 되었다. 1408년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그 해 처녀진현사(處女進獻使)로 명나라에 갔다. 1409년 형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민무질(閔無疾) 사건에 연루, 면직되었다. 1411년 개성유수로 있을 때 저화(楮貨)에 '삼사신판(三司申判)'이라는 글 대신 '호조신판(戶曹申判)'으로 바꿀 것을 주장, 시행하게 하였다. 1413년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 해 귀국해 참찬의정부사가 되었다.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 장흥의 금계사(金溪祠), 대구의 서계서원(西溪書院), 함안의 도천사(道川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공도(恭度)이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cited 2013.6.5]. <http://people.aks.ac.kr/index.aks>).

〈표 5〉『定社功臣錄券』의 本文 内容

順序	内容	奉命者
1	洪武 31(1398)年 9月 日 정사공신 책봉 관련 도평의사사 출납	都承旨 李文和
2	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에 관한 王旨의 내용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洪武 31年 10月 初 각 관서별 업무 분장 사항 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 위의 내용 관련한 教旨의 내용	都承旨 李文和

에서 설명한 왕지 부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定社功臣錄券』의 王旨 부분

『정사공신녹권』에 기록된 교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 되지 않으니, 진실로 근본을 바루고 시초를 바로 잡아 천명(天命)에 안정하고 국조(國祚)를 만세(萬世)에 전해야 될 것임에도, 불행히 간신(奸臣) 정도전과 남은 등이 상왕(上王)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시기를 당하여 어린 서자(庶子)의 세력을 믿고 난을 일으켜 우리 여러 형제를 해치려 하고,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왕업(王業)을 전복(顛覆)하고자 하여 화(禍)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는데,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 · 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 · 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 · 정안공(靖安公) 이방원(李芳遠) · 상당후(上黨侯) 이백경(李伯卿) · 좌정승 조준(趙浚) · 우정승 김사형(金士衡),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 · 참찬문하부사 조박(趙璞), 정당문학(政堂文學) 하윤(河峯) · 참찬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 · 참지문하부사 조영무(趙英茂)가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 · 청원후(青原侯) 심종(沈宗) · 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 ·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이지란(李之蘭) · 참찬문하부사 장사길(張思吉) · 상의문하(商議門下) 조온(趙溫) · 편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로(金輅) · 전상의중추박포(朴苞) · 전중추원사 정탁(鄭擢) · 동지중추원사 이천우(李天祐) · 상의중추(商議中樞) 장사정(張思靖) · 동지중추(同知中樞) 장담(張湛) ·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 ·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숙번(李叔蕃) · 상장군 신극례(辛克禮) · 대장군 민무구(閔無咎) · 호조의랑(戶曹議郎) 민무질(閔無疾) 등은 성심을 써서 보좌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맡은 관원은 이를 거행하라.”⁹⁾

9) 功臣都鑑 編, 『定社功臣錄券』.

國家創業未久 誠宜端本正始以凝傳祚萬世 不幸 奸臣 道傳 南闇等 當上王 失豫彌留之際 欲挾幼孽 害我之業 禍在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사공신은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힘을 썼기에 책봉되었음이 확인된다. 왕지의 내용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12명, 2등은 17명이 차례로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함께 기재되었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1등공신에 이화를 비롯하여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등이 속한 사실로 비추어 1등공신에는 왕실의 친족이 다수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0월 초 1일에 공신의 처우와 각 관서별 업무분장에 대해 '도승지 이문화'에게 교서를 내렸다.¹⁰⁾ 그 내용은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하고 선공감(繕工監), 도화원(圖畫院), 이조(吏曹), 호조(戶曹), 형조(刑曹), 병조(兵曹) 등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3.3.3 卷末

권말에는 녹권의 시행일자인 '洪武 31年 11月 日'이 기재된 후, 공신 책록을 위해 봉군(封君) 대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등급을 1·2등으로 나눠 훈호를 내리는 업무를 맡아보았던 공신도감원들의 직함과 성씨(姓氏) 및 그들의 수결이 기재되었다.

不測 義安公 和 益安公 芳毅 懷安公 芳幹 靖安公 芳遠 上黨侯 伯卿 左政丞 趙浚 右政丞 金士衡 參贊門下府事
居易 參知門下府事 英茂 等 奮忠決策定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難忘是齊
寧安侯 良祐 清原侯 沈淳 奉寧侯 福根 門下侍郎贊成事 之蘭 參贊門下府事 思吉 商議門下府事 趙溫 判中樞院事
金輅 前商議中樞院事 朴苞 前中樞院學士 鄭擢 同知中樞院事 天祐 商議中樞院事 思靖 同知中樞院事 張湛 中樞院
副使 張哲 右副承旨 叔蕃 上將軍 克禮 大將軍 無咎 戸曹議郎 無疾 等 推誠協謀 定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
難忘是去有等以褒賞之典有司 宜亟舉行爲良

10) 功臣都鑑 編, 『定社功臣錄券』.

4. 錄券의 内容 分析

이 장에서는 녹권의 내용에 따라 등급별로 공신의 직함과 성명 및 공로사례를 알아보고, 이들 직함에 따른 품계를 분석하여 등급별 공신들의 특징을 조사한다. 그리고 공신 등급별 포상 및 특전 규정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녹권 발급과 관련된 사람들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을 조사하여 그 구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수결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4.1 공신의 직함·성명 및 공로사례

4.1.1 定社功臣一等

녹권에 기재된 정사공신 1등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들의 공로사례는 세자 이방석과 그를 옹호하는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기반을 세우는 데 계책을 세우고 세상을 바로잡아 종사를 편안하게 한 것이다. 이들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방원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방원의 친인척들이 많다. 이방원을 군사적으로 응원하고 정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 이방원을 지지해준 조정

〈표 6〉 定社功臣 1等의 직함과 성명 및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1	義安公	李和	宗親	7	右政丞	金士衡	정1품
2	益安公	李芳毅	宗親	8	參贊門下府事	李茂	정2품
3	懷安公	李芳幹	宗親	9	參贊門下府事	趙璞	정2품
4	靖安公	李芳遠	宗親	10	政堂文學	河峴	정2품
5	上黨候	李伯卿	宗親	11	參贊門下府事	李居易	정2품
6	左政丞	趙浚	정1품	12	參知門下府事	趙英茂	종2품

〈표 7〉 定社功臣 2等의 직함과 성명 및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1	寧安侯	李良祐	宗親	10	同知中樞院事	李天祐	종2품
2	清原侯	沈濬	宗親	11	商議中樞院事	張思靖	종2품
3	奉寧侯	李福根	宗親	12	同知中樞院事	張湛	종2품
4	門下侍郎贊成事	李之蘭	정2품	13	中樞院副使	張哲	종2품
5	參贊門下府事	張思吉	정2품	14	右副承旨	李叔蕃	종2품
6	商議門下府事	趙溫	정2품	15	上將軍	辛克禮	정3품
7	判中樞院事	金輅	정2품	16	大將軍	閔無咎	종3품
8	前商議中樞院事	朴苞	정2품	17	戶曹議郎	閔無疾	정4품
9	前中樞院學士	鄭擢	종2품				

대신들도 포함되었다.

4.1.2 定社功臣二等

정사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모두 17명이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차례로 녹권에 기재되었으며, 직함과 성명, 직함에 따른 품계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등공신으로 책봉된 17명의 공로사례는 1등 공신과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나 1등공신은 제1차 왕자의 난을 도모하고 주도한 사람들이고, 2등공신은 대체로 난이 있던 그 날에 군사행동을 함께한 사람들로 1등공신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녹권에서 이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순서는 직함에 따른 품계를 조사해보니 왕과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하여 정2품 → 종2품 → 정3품 → 종3품 → 정4품의 순서로 품계가 높은 순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공신의 직함에 따른 품계 분석

4.2.1 定社功臣一等

위에서 정리한 〈표 6〉을 토대로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된 사람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보면 10종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정2품이 5명으로 1등공신의 약 41.7%가 이에 속해 있다. 그 다음은 '公'의 직함을 가진 이들이 4명 그리고 상당후 1명이 1등공신 중 약 41.7%의 비율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왕의 형제·아들이거나 사위 등 친인척이었다. 왕의 친인척이 1등공신으로 다수 책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1품인 좌정승·우정승 2인이 1등공신에 포함되었다.

4.2.2 定社功臣二等

〈표 7〉을 토대로 정사공신 2등에 책봉된 사람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보면 16종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2등공신 17명의 직함에 따른 품계를 정리한 〈표 9〉를 살펴보면 직함은 16종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품계를 살펴보니 친족은 3명, 정2품은 5명, 종2품은 6명, 정3품과 종3품 그리고 정4품은 각 1명씩이었다. 1등공신에서는 정1품의 직함을 지닌 사람이 있었으나 2등공신에는 정1품의 직함은 찾아볼 수 없다. 품계별로 종2품의 공신이 전체 인원의 약 35.3%로 가장 많았으며 정2품인 공신이 약 29.4%로 많았다. 종친의 비율은 1등공신의 경우보다는 줄었으나 친인척이 2등공신으로 책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정3품, 종3품, 정4품의 상대적으로 낮은 품계에서도 공신으로 책봉이 되었다.

1등공신과 2등공신의 품계 분포를 비교해보니 1등공신의 품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왕의 친인척들이 1등공신에 비교적 많이 책봉되었다. 2등공신은 1등공신에 비해 품계가 낮았다.

〈표 8〉 定社功臣 1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종친	義安公·益安公·懷安公·靖安公·上黨候	5	41.7
정1품	左政丞·右政丞	2	16.6
정2품	參贊門下府事·參知門下府事·政堂文學	5	41.7
	合計	12	100

〈표 9〉 定社功臣 2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종친	寧安侯·清原侯·奉寧侯	3	17.6
정2품	門下侍郎贊成事·參贊門下府事·商議門下府事·判中樞院事·前商議中樞院事	5	29.4
종2품	前中樞院學士·同知中樞院事·商議中樞院事·中樞院副使·右副承旨	6	35.3
정3품	上將軍	1	5.9
종3품	大將軍	1	5.9
정4품	戶曹議郎	1	5.9
	合計	17	100

4.3 포상 및 특전

공로사례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혹은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포상 및 특전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4.3.1 定社功臣一等

의안공 이화·익안공 이방의·회안공 이방간·정안공 이방원·상당후 이백경·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참찬문하부사 이무·참찬문하부사 조박·정당문학 하륜·참찬문하부사 이거이·참지문하부사 조영무 등은 왕을 보좌하여 사직(社稷)을 안정하게 하였기에 정사1등 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이들에게 내린 포상 및 특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녹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표 10〉에 따르면 정사공신 1등에게는 각각 전각(殿閣)을 세워 초상화를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훈을

기록하며, 작(爵)을 봉하고 토지를 내린다. 부모와 처에게는 3등급을 올려 봉증(封贈)하며, 직계 자식은 3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에게 2등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하며 또한 적장(嫡長)은 녹봉을 끊임없이 물려받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定社1等功臣' 아무개의 자손임을 기록하여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사면(赦免)이 영세(永世)에 미치도록 특전을 베풀었다. 물질적으로는 전지 100결, 노비 15구,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進拜把領) 10명과 안장을 갖춘 내구마 1필, 금품대 1요와 표리 1단씩을 내려주었다.

4.3.2 定社功臣二等

영안후 이양우·청원후 심종·봉녕후 이복근·문하시랑찬성사 이지란·참찬문하부사 장사길·상의문하부사 조온·판중추원사 김로·

〈표 10〉 정사공신 1등 포상 및 특전 내용

區分	褒賞 · 特典 規程	
본인	立閣圖形 豎碑紀功 封爵錫土	
부모 · 처	超三等封贈	
자손	直子	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 超二等
기타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孫乙良 政案良中 定社一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丘史柒名 眞拜把領拾名 各田貳百結 各奴婢貳拾五口 各內廄馬壹匹 鞍子具 各金品帶一腰 各表裏壹段	

전상의중추원사 박포·전중추원학사 정탁·동지중추원사 이천우·상의중추원사 장사정·동지중추원사 장담·중추원부사 장철·우부승지 이숙번·상장군 신극례·대장군 민무구·호조의랑 민무질 등은 성의를 다해 도모한 바를 도와 난을 평정하고 세상을 바로잡아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정사2등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1등과 달리 2등공신에게는 같은 등급의 공신임에도 사람에 따라 포상 및 특전이 다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녹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표 11〉에 따르면 정사공신 2등에게는 각각 전각을 세워 초

상화를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훈을 기록하며, 작(爵)을 봉하고 토지를 내린다. 부모와 처에게는 2등급을 올려 봉증(封贈)하며, 직계 자식은 2등을 올려 읍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에게 1등을 올려 주었다. 그리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하며 또한 적장(嫡長)은 녹봉을 끊임없이 물려 받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定社1等功臣' 아무개의 자손임을 기록하여 비록 죄를 범 하더라도 사면(赦免)이 영세(永世)에 미치도록 특전을 베풀었다. 물질적으로는 공통적으로 구사 5명과 진배파령 8명을 내주라고 하였다.

〈표 11〉 정사공신 2등 포상 및 특전 내용

區分	褒賞 · 特典 規程		
본인	立閣圖形 豎碑紀功		
부모 · 처	超二等封贈		
자손	直子	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 超一等	
기타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孫乙良 政案良中 定社二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丘史五名 眞拜把領捌名		
	各田壹百五拾結 各奴婢拾五口 各內廄馬一匹 各金銀品帶一腰 各表裏一段 ⇒해당자		
	商義門下府事 趙溫 同知中樞院事 天祐 中樞院副使 張哲 右副承旨 叔蕃 上將軍 克禮 大將軍 無咎 戶曹議郎 無疾		
	各田壹百結 各奴婢拾口 各內廄馬壹匹 各金品帶壹腰 各表裏壹段 ⇒해당자		
	寧安侯 良祐 清原侯 沈濤 奉寧侯 福根 門下侍郎贊成事 之蘭 參贊門下府事 思吉 判中樞院事 金輅 前商議中樞院事 朴苞 前中樞院學士 鄭擢 商議中樞院事 思靖 同知中樞院事 張湛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등공신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포상 및 특전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녹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조온·이천우·장철·이숙번·신극례·민무구·민무질 등 7명에게는 전지 150결, 노비 15구, 내구마 1필, 금은대 1요와 표리 1단씩을 내리라고 하였다. 반면에 이양우·심종·이복근·이지란·장사길·김로·박포·정탁·장사정·장담 등 10명에게는 전지 100결, 노비 10명, 내구마 1필, 금품대 1요와 표리 1단씩을 내리라고 하였다. 이렇듯 같은 등급의 공신이라도 각각 포상 및 특전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료가 없다. 다만 각 포상 및 특전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공신들로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품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녹권의 앞쪽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같은 2등공신에 책봉이 되었더라도 이들이 더 큰 공로를 세웠던 것

이 아닌가 추측해보며, 관련 사료를 보충하여 앞으로 더 연구할 내용이다.

정사공신 1등과 2등은 등급의 구별이 있으므로 이들의 포상 및 특전 규정 또한 차이가 있다. 〈표 12〉는 이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2〉에서 나타난 굵은 글씨가 정사공신 1등과 2등의 포상 및 특전 규정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듯 공신들에게 내려지는 포상의 내역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며 또한 개인마다 내려지는 포상의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포상 및 특전 규정 내용을 비교해보면 포상을 받는 범주는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으나 수량 혹은 봉증(封贈)되는 등급 차이의 내역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녹권에서 위와 같은 포상령과 함께 녹권을 만들어주라는 명령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상시행 각 관계부처에 이첩하여 명령대

〈표 12〉 정사공신 1등과 2등의 포상 및 특전 내용 비교

區分	褒賞 · 特典 規程			
	1등		2등	
본인	立閣圖形 豎碑紀功 封爵錫土		立閣圖形 豎碑紀功	
부모·처	超3等封贈		超2等封贈	
자손	直子	超3等蔭職	直子	超2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婿 超2等	無直子	甥姪女婿 超1等
기타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孫乙良 政案良中 定社二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丘史7名 眞拜把領10名		丘史5名 眞拜把領8名	
	各田 200結 各奴婢 25口 各內廄馬 1匹 鞍子具 各金品帶 1腰 各表裏 1段		各田 150結 各奴婢 15口 各內廄馬 1匹 各金銀品帶 腰 各表裏 1段	各田 100結 各奴婢 10口 各內廄馬 1匹 各金品帶壹 1腰 各表裏 1段

로 시행하라는 기록을 담고 있다. 즉 포상시행에 있어서 관서별로 업무분담을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정사공신에 대한 포상의 관서별 업무분담

번호	관서명	해당 업무
1	嬉工監	立閣豎碑
2	圖畫院	圖形
3	藝文春秋館	紀功
4	吏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父母妻封贈 - 子孫蔭職 - 婦長世襲 - 子孫政案施行
5	戶曹	賜給田地字號申聞
6	刑曹都官	給田司奴婢花名申聞
7	兵曹	丘史把領 及初入仕

정사공신의 포상시행과 관련된 기관들과 각 관서별 업무내용을 정리하면, 비(碑)와 전각을 세우는 일은 선공감에서, 공신의 화상(畫像)을 그리는 일은 도화원에서 하고, 공훈(功勳)을 기록하는 일은 예문춘추관이 하며, 부모·처의 봉작과 자손의 음직 수여 그리고 적장(嫡長)의 세습 및 공신 자손들을 정안(政案)에 기록하는 것 등은 이조에서 하도록 했다. 전지(田地)의 자호(字號)를 정하고 보고하는 일은 호조에서, 노비의 차출명단을 보고하는 일은 형조도관(刑曹都官)에서 하였으며, 구사(丘史)와 진배파령(眞拜把領)을 배정하고 초입사(初入仕)하게 하는 일은 병조에서 맡아보게 했다. 공신 책봉을 비롯하여 공신에게 시행하는 포상과 특전에 관한 일까지 여러 관서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여 한 사실로 보아 공신을 책봉하는

일이 나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4.4 녹권 발급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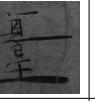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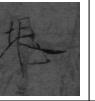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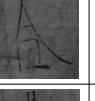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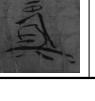
녹권의 마지막에는 녹권 발급 관여자와 공신도감원의 직함과 성씨가 있고 이들의 수결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공신을 책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공신도감과 녹권 발급 관여자들의 직함·성씨를 적고 그 아래에 수결을 하여 녹권의 사급(賜給)을 입증해준다.

공신도감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을 표창하고, 그 업적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세웠던 관청이다. 정사공신을 책봉하는 일련의 과정 또한 공신도감에서 주관하였는데, 『정사공신녹권』에 기록된 공신도감의 관원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도감의 관원은 녹사(錄事)·부사(副使)·사(使)·판사(判事) 각 2명이고, 판관(判官)은 1명이며, 이들은 각자의 직함과 성씨 다음에 수결을 하고 있다. 판관이라는 직함 아래에 공란으로 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원래 판관을 2명을 두었는데 정사공신 책봉을 위한 공신도감에서는 1명만을 둔 것으로 보인다. 수결은 시대에 따라 양식이 있는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었지만 도장(圖章)을 사용하기 이전까지 쓰인 수결(혹은 着名)의 양식은 정치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이전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¹¹⁾ 즉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이름자를 충실히 변형한 차명의 양식적 특징을 거의 그

11) 박준호, 조선시대 着名·署押 양식 연구, 『古文書研究』, 24: 144.

〈표 14〉 공신도감 官員의 官職·職銜 및 姓氏, 手決 및 성명

번호	관직·직함		姓氏	품계	手決	姓名
1	判事	崇政大夫三司左僕射同判都評議使司事	安	종1품		安翊
2		特進輔國崇祿大夫醴泉伯集賢殿大學士領書雲觀事	權	종1품		權仲和
3	使	通政大夫成均大司成知製敎	朴	정3품		朴信
4		中直大夫左諫義大夫直集賢殿知製敎 兼 藝文春秋館 編修官經筵侍講官	趙	종3품		趙庸
5	副使	奉正大夫兵曹議郎	安	정4품		安魯生
6		奉正大夫成均樂正知製敎	柳	정4품		柳伯淳
7	判官	通德郎 右補闕 藝文春秋館 應敎知製敎 兼 尚瑞司丞	李	정5품		李垠
8	錄事	都評議 錄事	張	정7품		張合
9		權知式目都監 錄事 承仕郎 謄官署丞	全	정7품		美상

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정사공신녹권』에 직함과 성씨가 기재되어 그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수결을 통해 공신도감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 녹권이 지급되던 1398년 당시, 공신도감원들의 직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이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공신도감원의 성명은 수결을 통해 알아낸 후에 기

타 사료를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녹사는 정7품의 장합(張合)과 전씨이고, 판관은 정5품 이은(李垠)이며, 부사는 정4품 안노생(安魯生)과 유백순(柳伯淳)이다. 사는 종3품 조용(趙庸)과 정3품 박신(朴信)이며, 판사는 종1품의 안翊(安翊)과 권중화(權仲和)이다. 이들의 직함을 보니 겸직(兼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신도감이 임시로 설치되어

기준의 관원들이 임시로 공신도감의 사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공신도감 관원들의 직함·성씨·수결 뒤에는 이조(吏曹)의 관원의 명단이 있다. 이들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은 〈표 15〉로 정리된다.

〈표 15〉와 같이 이조 관원들은 좌랑·정랑·의랑·전서 각 2명씩 정해졌는데, 이들은 모두 수결을 했다. 의랑과 전서 사이에 지조사(知曹事)라는 관직명은 있었으나 공란으로 비어져 있어 이에 해당되는 관원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결을 통해 당시의 관원들이 누구

인지를 살펴보았고, 몇몇은 수결로 이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좌랑은 정6품의 민제(閔霽)와 신상(申商)이고, 정랑은 정5품의 권씨와 윤수(尹須)이며 의랑은 정4품의 정절(鄭節)과 원씨였다. 전서는 전씨와 하씨로, 이들의 수결이 있으니 후에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별감은 3명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수결하였다. 이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 그리고 수결을 통한 성명 확인한 것은 〈표 16〉과 같다.

〈표 15〉 吏曹 官員의 官職·職銜 및 姓氏, 手決 및 성명

번호	관직 · 직함		姓氏	품계	手決	姓名
1	典書	嘉善大夫集賢殿直學士經筵侍講官	全	종2품		미상
2		嘉善大夫	河	종2품		미상
3	議郎	奉正大夫	鄭	정4품		鄭節
4		奉正大夫	原	정4품		미상
5	正郎	通德郎考正郎知製教兼都評議使司事 檢詳條例司檢詳	權	정5품		미상
6		通德郎	尹	정5품		尹須
6	佐郎	承議考功佐郎	閔	정6품		閔霽
7		承議郎兼都評議使司經歷司都事	申	정6품		申商

〈표 16〉 別監의 官職·職銜 및 姓氏, 手決 및 성명

번호	관직·직함	姓氏	품계	手決	姓名
1	別監	李	정3품		李文和
2		柳	정3품		美상
3		朴	종3품		朴愬

별감의 위의 3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수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3품의 이문화(李文和)와 유씨 그리고 박은(朴愬)이다.

조사대상본인 장철의 『정사공신녹권』에는 녹권 발급 관여자들이 모두 19명이며 이들 모두가 수결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공신도감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그 가치가 높다.

5. 結 論

이 연구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힘쓴 공으로 책봉된 공신에게 반사된 『정사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발급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공신녹권』은 태조조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일에 힘쓴 29명(1등 12명, 2등 17명)을 공신으로 책봉한 후 그들에게 반사한 공신증명서이다.

둘째, 『정사공신녹권』은 현재 안동장씨중앙대종회에서 소장 중이며, 조사대상 녹권에 기재된 수급자 사항은 2등으로 책봉된 장철(張哲)이었다. 실물 대신에 복제본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녹권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정사공신녹권』은 필사된 권자본 형태의 1축(軸)으로, 이 녹권의 서지적 특징은 상하단변의 주사란이며 행수는 모두 96행이며 1행의 자수는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이 녹권의 경우는 5장을 접지하였는데 접지한 부분에 '吏曹之印'의 인장을 주인 했다. 그리고 각 장의 가운데에 인장이 있어 모두 9군데에 주인된 모습이다.

넷째, 『정사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의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출납일·봉명자, 왕지(王旨)의 내용,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공신 책봉의 사유 그리고 포상 및 특전 규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신 포상 및 특전에 관한 업무를 각 관서별로 분장한 사항도 포함된다. 권말은 녹권 시행 일자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

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정사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모두 29명으로, 이들은 2등급으로 구분되어 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공신은 10종의 직함에 모두 12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친인척과 정2품이 각 5명, 약 41.7%씩으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1품에 해당하는 2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2등공신은 16종의 직함에 모두 17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종2품이 6명으로 약 35.3%, 정2품이 5명으로 약 29.4%이며, 친인척이 3명으로 약 17.6% 순으로 많았다. 등급별 공신들의 품계 분포를 비교해보니 1등공신이 2등공신보다 그 품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왕의 친인척들이 1등공신에 비교적 많이 책봉되었다.

여섯째, 정사공신의 포상 및 특전 규정은 대체로 그 범주는 비슷하였으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량을 달리하였다. 또한 같은 등급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였다. 그리고 포상을 시행하는 관계부처를 여럿 두어 관서별로 업무분담을 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

였다.

일곱째, 『정사공신녹권』은 정사공신을 책봉하고 녹권을 지급하기까지의 제반업무를 담당한 공신도감의 관원 및 이조 등 책임자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을 기재하였다. 조사대상본에는 이들이 모두 19명이었으며, 몇몇을 제외하고는 조선 초기 수결의 특성에 따라 그 모양과 성씨를 토대로 관원들의 성명을 자세하게 추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조선 초기의 고문서, 특히 녹권의 형태를 비롯하여 체제, 내용을 분석을 하였다. 장철이 발급받은 『정사공신녹권』은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이며 조선 초기에 정공신에게 발급된 녹권이라는 사료적 및 서지적 가치를 지니므로, 이 녹권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역사학, 고문서학, 서지학 연구에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조선시대 공신의 책봉에 관한 사실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조선 공신 인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定社功臣錄券』. (개인소장본)
- [2] 『朝鮮王朝實錄』.
- [3] 신명호. 2002. 『조선의 공신들』. 서울: 가람기획.
- [4] 安東張氏大同譜編纂委員會. 2001. 『安東張氏大同譜』. 서울: 뿌리문화사.
- [5] 李成茂. 1995.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一潮閣.
- [6] 장세경.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7] 千惠奉. 2006.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 [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9] 韓永愚. 1997.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 [10] 박봉숙. 1987. 『朝鮮太祖朝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11] 朴俊鎬. 2004. 조선시대 着名 · 署押 양식 연구. 『古文書研究』, 24: 141-179.
 - [12] 서병태. 2005. 조선 초기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書誌的 考察. 『書誌學報』, 29: 27-58.
 - [13] 성인근. 2008. 『조선시대 印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14] 李成茂. 1976.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13: 173-191.
 - [15] 林基榮. 2002.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16] 秦奈伶. 2008.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17] 千惠鳳. 1988.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 25-67.
 - [18] 崔承熙. 1998.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22: 113-157.
 -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cited 2013.4.25].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 [2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cited 2013.6.5]. <<http://people.aks.ac.kr/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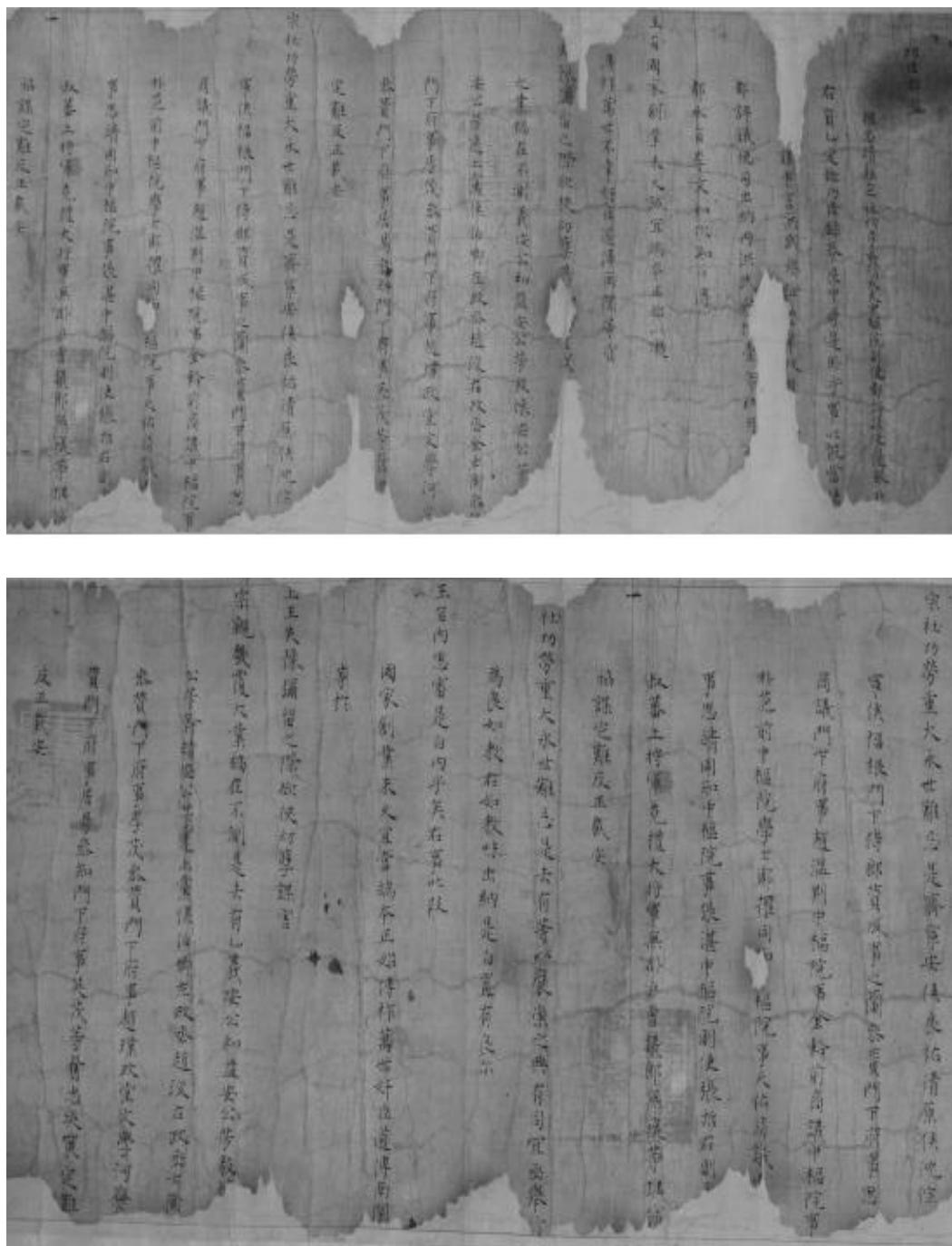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Jeong Sa Gongsin-Nokgwon.
- [2] Chosunwangjosilrok.
- [3] Shin, Myeongho. 2002. *Cho Seon's meritorious retainers*. Seoul: Ga Ram.
- [4] An Dong, Jang's family. 2001. *Genealogy of An Dong, Jang*. Seoul: An Dong, Jang's family.
- [5] Lee, Seongmu. 1995. *A study of Yangban Society of Cho Seon Dynasty*. Seoul: Il Jo Gak.
- [6] Chang, Segyeong. 2001. *Dictionary of the "Idu"*. Seoul: Han Yang university.
- [7] Cheon, Hyebong. 2006. *The Korean bibliography*. Seoul: Mineumsa.
- [8]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4. *EncyKorea*. Seong 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9] Han, Yeongu. 1997. *Social Status in Early Choson Dynasty*. Seoul: JipMoon Dang.
- [10] Park, Bongsuk. 1987. *A bibliographical study on Kaeguk Wonjong Kongsin Rok Kwon in the era of the First Emperor of Lee Dynasty*. M.A.thesis, Ewha Wome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1] Park, Junho. 2004. "A Study on the Style of Chak-Myoung and Seo-Ab in Chosun

-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24: 141-179.
- [12] Seo, Byeongpae. 2005. "A Study on the Ma Cheon mok's Jwa Myeong Gongsin-Nokgwon in early Chosun Dynasty." *The Korea Bibliography*, 29: 27-58.
- [13] Seong, Ingeun. 2008. *A study on stamp of the Choson Dynasty*. Ph.D.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14] Lee, Seongmu. 1976. "The System of Social Standing in Early Chosun Dynasty." *Dong-A Munhwa*, 13: 173-191.
- [15] Lim, Giyeong. 2003. *A Bibliographical Study on Gongsin-Nokgwon awarded after Japanese Invasion*. M.A.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6] Jin, Na-young. 2008. *A study in printed books of Gongsin-Nokgwon in Chosun dynasty*. M.A.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7] Cheon, Hyebong. 1988. "A study on 'the Meritorious Certificate of Founding Subject' awarded to Uianbaek Yi-hwa in Yi dynasty." *Seojihak Yeongu*, 3: 25-67.
- [18] Choi, Seunghui. 1998. "the Social Status System in the Late Choson Dynasty." *Hankookmunhwa*, 22: 113-157.
- [19] EncyKorea. [online].
[cited 2013.4.25].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 [20] A General Information System of Korean Historical Figures. [online]. [cited 2013.6.5].
<<http://people.aks.ac.kr/index.jsp>>.

[附錄] 定社功臣錄券 書影



宗德為日子所

至廿四兒如功勞重大永世難忘是自有後來定社二等功臣

碑下又題扁形堅碑記。功人世夏題。二李封題。孟子封題。

五名。每件把頭稱名許。如人仕婿長世襲。不夫其子孫。無

已後故舉選中之社二等功臣某之子孫是必施行雖信賴
他官及水土為等級復賞令是良如故是為不如科一

獻奉成於為道之閒暨辭之後幾于盡而形之後著書既

功山長舊文春秋錄父母東封爵子號莊戰婦長也號子孫欽榮施行山長史書

卷之三

龍溪先生全集

開化後，唐都官主史杞鍾又初入江，後卒，而其子杞使

向著出的各堂官多長如教育司謹啟中

聞馬白子亦中大成。癸卯年拾月初七日都承旨送政

夫經道本質宜漁商耕戶之數直庶子士知農牧尤庶人亦

欽定四庫全書
卷之三

王旨依申教矣。一等功臣一員各田貳百畝。各分縛貳拾五口各內廄。

壹直缺子員各全品嘗一腰各表裏壹段式以備

時為齊二年幼臣商議門下府事過溫同知中樞院事天祐中

院副使故指右衛承旨叔春上將軍免禮大將軍無歸戶臣

請郎無疾等。以是冬田空百亩拾結各奴婢拾五口各內廳毛

正名全錄

賜為齊寧侯良祐清原侯沈潔奉寧侯楊敬門下侍郎故其

事之關於寶門下府事也。右判中樞院事金諭前商議中樞

院事朴荀甫中樞院學士鄭權商議中樞院事思靖同知中

櫈院事張濬等上奏各因臺百時各从婢臣以各內庇焉

古今圖書集成醫學卷各表更壹段式一言

鳴為良妙教右如教事是上「有良鳴錄其

洪武冬俗壹年拾壹月

111

卷之三

